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다날(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라 함은 회원이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 가. 발행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
 3.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회원 자격을 부여 받아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제휴사"라 함은 회원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와 별도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합니다.
 5. "가맹점"이라 함은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로 지급받는 자로 제휴사와 별도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체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상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회원번호
 - 라. 회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충전"이라 함은 회원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

- 는 경제적 가치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생성 및 저장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8. “자동충전”이라 함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때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결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회원이 기 등록된 충전수단으로 결제금액이 충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9. “환급”이라 함은 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잔액을 회원과 회사 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10. “해외 사용”이라 함은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지불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11. “본인 인증”이라 함은 회원의 본인확인을 하기 위하여 회원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망에 가입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 외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말합니다.
- ② 기타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본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 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④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시행예정일 1개월 이전에 약관의 변경 사실 및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전자우편 발송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⑤ 법령개정, 제도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 긴급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3항의 절차 없이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즉시 통지합니다.
- ⑥ 회사가 제4항 및 제5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⑦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이용계약은 아래 각 호의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회사는 충전한도 상향 등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회원의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예금계좌 연결 또는 별도의 실명확인 및 본인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2. 이용 희망자의 약관 동의
3.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 작성 후 회원 가입 신청
4. 회사의 승낙

제6조 (이용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3. 본인 확인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사용)

- 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보유한 회원은 가맹점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를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결제금액에 부족한 경우 회원이 미리 등록한 충전수단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가 자동충전 됩니다.
- ③ 회원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사용 후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의 합의 또는 가맹점 내부 정책에 따라 거래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절차 완료 즉시 결제금액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으로 충전됩니다. 단, 자동충전 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는 자동충전에 사용된 지불수단으로 환급됩니다.
- ④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에 필요한 세부내용, 그 외 제한사항 등이 포함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회원은 안내에 따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사용합니다.

제8조 (해외 사용)

- ① 본 약관에 동의한 회원은 해외 가맹점에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법령 및 회사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③ 해외 사용 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은 아래 각 호의 과정을 거쳐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단, 회원이 결제를 취소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1. 해외 가맹점의 현지통화로 산정된 금액을 제휴사가 정한 환율을 통해 USD달러로 환산
 - 2. 제1호의 금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정한 환율을 통해 원화로 환산한 후 환율수수료를 부과하여 회원에게 청구
 - 3. 제2호의 청구 금액은 다날유니온페이 선불카드 잔액 차감의 방식으로 결제되고, 청구 금액이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 제2항에 따라 자동 충전되어 결제
- ④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해외 사용할 수 있는 해외 가맹점, 사용에 필요한 세부내용, 제한사항 등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해외 사용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회원은 안내에 따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사용합니다.

제9조 (충전)

- 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충전된 1point는 원화 1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 ② 회원은 휴대폰소액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충전할 경우 회사는 일정한 충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충전수수료, 충전한도, 충전방법 등은 운영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해당 정책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회원은 이를 충분히 숙지 한 후 충전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④ 회원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자동충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회사가 요청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⑤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충전과 관련하여 회사는 1회당 충전 한도 및 일 별, 월 별 최대 충전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회사가 정한 최대 잔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충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최대 충전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2.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최대 잔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3. 불법, 부정사용 및 비정상거래의 목적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기타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통해 진행된 거래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의 기지급 금액이 환불되었을 때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최대 잔액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한도에서 부족액이 발생할 때까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충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취소 및 환급)

- ① 회원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충전 후 7일 내 사용 이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충전을 취소 할 수 있고 이 경우 충전수수료를 포함한 결제액 전액이 환급됩니다. 단, 휴대폰소액결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 시스템상 취소가 불가능할 때에는 회원이 회사에 취소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충전수수료를 포함한 결제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② 회원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사용하였거나 충전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 환급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충전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모든 잔액을 환급합니다.
 - 1.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회원이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이상(단,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 80이상)을 사용한 후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자체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③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취소 및 환급에 관한 기준, 환급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운영정책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회원은 안내에 따라 취소 및 환급절차를 진행합니다.

제11조 (유효기간 및 소멸)

- 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충전일로부터 5년(60개월)입니다.
- ②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는 자동 소멸됩니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회원탈퇴)를 요청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잔액이 소멸합니다.
- ④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소멸예정 잔액, 소멸 시기, 유효기간의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및 환급절차를 전자우편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제12조 (발행 한도)

- 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최대 잔액한도는 아래 각 호에 따릅니다. 단, 잔액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1. 실지 명의당 200만원
 - 2. 실지 명의를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
-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은행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접근매체의 선정 및 관리)

- ①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을 위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회원은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접근매체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4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이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전자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② 전항의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회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해당 기간은 정보제공을 위한 2주의 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의 종류, 금액, 일시 및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2.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4. 거래에 관한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 5.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6.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7.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④ 제1항의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⑤ 회원은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제1항의 정보제공을 요청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9층
 - 이메일 주소: help@danal.co.kr
 - 전화번호:1566-3355

제15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인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④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부담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회사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
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⑤ 회사의 귀책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책임의 범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6조 (개인정보)

- ①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원활한 거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제휴사 및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회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관한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회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회원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7조 (휴면 회원의 관리)

-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11개월간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지 아니하고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발행, 충전, 사용 등의 이력이 없는 회원을 휴면 회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휴면회원의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류하여 보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를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고지하는 운영정책 준수와 접근매체에 관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④ 회원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원은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 ⑥ 회원은 회사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가 회원의 본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회사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회원의 금지행위)

- ①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원이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 회사가 제공하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2.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하는 행위
 - 3.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행위
 - 4.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등을 포함하는 업무 방해 행위
 - 5. 회사가 제공하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② 회사는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관련 행정기관 등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이용의 정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제18조 각 항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회원이 제19조에 기재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회사가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5. 회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을 정지한 경우,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정지 사실 및 이용정지 사유와 함께 사유 해소 기간, 사유 해소 방법 및 절차,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통지합니다.

제21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회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②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불법, 부정 사용 및 비정상거래의 목적으로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2. 회원이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3. 회원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회원에게 제6조에서 정한 이용계약 신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5. 회원이 제17조에서 정한 휴면 회원으로 분류될 경우
 6. 회사가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회원의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

을 정지한 후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그 기간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④ 전항의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사실, 해지 사유,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를 하기 전에 최소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⑤ 회사가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회원이 해지 이전에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에 관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제22조 (이용의 일시중단)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발행, 사용, 충전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7일 이전에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발행, 사용, 충전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동일한 방법으로 24시간 이내 안내해야 합니다. 만일 시스템의 작동 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안내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행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휴사, 금융기관 등의 시스템 운영 상황이나 계약 체결 상황에 따라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의 발행, 사용, 충전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한 안내는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3조 (회사의 면책)

- ① 회사는 회원이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를 이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회원의 손해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간 발생한 거래와 관련한 배송, 청약 철회 또는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의 업무 수행은 가맹점과 회원 각각의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회사는 해당 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원의 귀책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이용장애 발생 등이 발생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주)다날 운영지원팀
 - 주소: (135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9층 (서현동, 분당퍼스트타워)
 - 이메일 주소: help@danal.co.kr
 - 전화번호:1566-3355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다날-유니온페이선불카드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1년 01월 25일로부터 시행합니다.